##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81

발의연월일: 2025. 2. 24.

발 의 자 : 남인순ㆍ이병진ㆍ김 윤

김남희 · 김성환 · 강훈식

한준호 · 서영석 · 박상혁

이수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,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 음.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은 사실상 영유아수당이라 할 수 있음.

또한,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수에 따라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「아동복지법」에서 정의하고 있는 '아동'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,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,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,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8세"를 "18세"로, "10만원을"을 "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자녀의 인정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1. 첫째 자녀인 아동: 10만원
- 2. 둘째 자녀인 아동: 15만원
- 3. 셋째 자녀인 아동 등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아동: 20만원 제5조제1항 중 "8세"를 "18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8세"를 "18세"로 한다.

제7조제5항 중 "8세"를 "18세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"8세"를 "18세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	제4조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
지급액) ① 아동수당은 <u>8세</u> 미	지급액) ① <u>18세</u>
만의 아동에게 매월 <u>10만원을</u>	<u>다음 각</u>
지급한다. <후단 신설>	<u>호에 따른 금액을 이</u>
	경우 자녀의 인정 범위 등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1. 첫째 자녀인 아동: 10만원
<u>&lt;신 설&gt;</u>	2. 둘째 자녀인 아동: 15만원
<u>&lt;신 설&gt;</u>	3. 셋째 자녀인 아동 등 제1호
	및 제2호 외의 아동: 20만원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5조(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	제5조(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
공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	공) ①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	
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	
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	
다)은 <u>8세</u> 미만 아동의 보호자	<u>1</u> 8세
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・	
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	
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	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	2
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	
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	

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<u>8세</u>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.

#### ③ • ④ (생 략)

- 제7조(조사·질문 등) ① ~ ④ (생 략)
  -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 장・군수・구청장은 <u>8세</u>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다.
  - ⑥·⑦ (생 략)
- 제10조(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 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

	<u>18세</u>
	<u>.</u>
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	7조(조사・질문 등) ① ~ ④
	(현행과 같음)
	⑤
	<u>1</u> 8ओ
	<u>.</u>
	⑥·⑦ (현행과 같음)
제	10조(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
	방법 등) ①

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 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 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 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 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 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수급아동 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 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 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 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 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 략)

<u>18</u>
② ~ ⑤ (현행과 같음)